2023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3. 10. 20.(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10명

- 위촉 위원(7)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원규, 김수정, 임준규, 임혜진, 정흥준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3건

ㅇ 보고사항 : 없음

ㅇ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2건)

▢ 심의결과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3건	1건	1건	1건
보고사항	-	-	-	-
의결사항	3건	1건 (기각 1)	1건 (권고 1)	1건 (기각 1)

▢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1건)				
23-37	23신청-19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원안가결
23-38	23신청-20	사회복지시설 온라인상 인격권 침해	권고	수정가결
23-39	23신청-22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기각	재상정

□ 의결사항

ㅇ [의안 제23-37호]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3신청-19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질의에 대해 신청인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답변에 대해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신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 등이 들어있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원안 가결함.

ㅇ [의안 제23-38호] 사회복지시설 온라인상 인격권 침해

- 23신청-20 (권고) 수정가결
- 피신청인이 이 사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부정적 감정이 담겨있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내용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피신청인은 인정사실 나~마항처럼 신청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고 피신청인이 페이스북에 게시·공유한 인터넷 기사와 영상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정 합의가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관련 인터넷 기사와 영상을 페이스북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게시·공유하여 인터넷 기사와 영상의 제목 등이 노출되도록 하거나 열람·검색되도록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행위는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넘어 신청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여 모욕감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

해하였다고 판단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의 범위를 ‘정보’ 나 ‘온라인상’ 인권교육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함.

ㅇ [의안 제23-39호]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 23신청-22 (기각) 재상정
- 본 사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사건 조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 본 안건을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